

제6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11. 29.(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휴가 중 유선으로 가결의사 표명)

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나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 제1호에서 의결한 ‘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’에 해당됨
- 보고 가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제1항에 따른 ‘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’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- 소상공인진흥원 - (2011-66(서)-308)

- 「방송법」 제9조(허가·승인·등록 등)제5항에 의거, 소상공인진흥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등록하기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< 등록내용 >

신청법인	채널명	방송분야	방송유형	대표자	최다액출자자(지분율)	납입자본금(실질자본금)
소상공인진흥원	소상공인방송(yestv)	비즈니스정보	TV	홍용웅	정부(100%)	5.5억원(52.3억원)

※ 등록조건 : 방송채널운영을 위한 외주 사업자 선정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

나. (주)지에스홈쇼핑의 법인합병에 관한 건 - (2011-66(서)-309)

- 「방송법」 제15조에 의거, (주)지에스홈쇼핑이 제출한 (주)디앤샵과의 ‘법인합병 변경 승인 신청’을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< 합병후 존속·소멸 법인 >

구 분	합병 후 존속법인	합병 후 소멸법인
상 호	(주)지에스홈쇼핑	(주)디앤샵 (주)지에스홈쇼핑 자회사)
대표이사	허태수	이석원
사업영역	TV홈쇼핑, 인터넷 전자상거래, 카탈로그	인터넷 전자상거래
임 직 원	901명	114명
주요주주	(주)지에스(지분율 30.00%)	(주)지에스홈쇼핑(지분율 49.14%)

③ 보고사항

가. 「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」 및 「통화권별 행정구역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와 마산·창원·진해시의 창원시 통합으로 지역번호 신설 및 통화권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음
- 주요내용
 - ①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지역번호 신설과 통화권 조정
 - (지역번호 신설) 「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」에 따라 특별자치시·광역시·도 단위 행정 구역에 별도 지역번호를 부여(제7조제3항)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 지역번호를 부여하되,

- 번호자원의 순차적 사용이라는 번호부여 원칙(번호이용자가 원하는 번호를 골라서 부여하지 않음)과 유사번호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44번을 부여(충남 41, 대전 42, 충북 43)

- (통화권 조정) 시내전화 사업자(KT, SKB, LGU+)와의 협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내 3개(충남 연기군 일원, 공주시 일부, 충북 청원군 일부)로 나뉘어 있던 통화권을 하나로 통합

② 경남 창원시의 통화권 조정

- (통화권 통합) 마산 통화권(마산시, 창원시)과 진해 통화권(진해시)을 창원 통화권(통합 창원시)으로 통합

※ 통합 창원시는 기존 지역번호(55)를 그대로 사용

③ 기타 일부 조문 현행화

-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으로 통신역무 구분이 이미 없어졌으나(시행령 제7조 삭제), 여전히 통신역무 구분을 전제로 하는 「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」 규정을 향후 번호관리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정
- “유선전화 지역번호를 ‘역무의 종류에 따라’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”는 규정(고시 제6조제3항)을 ‘이용자 편익을 위해’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변경

④ 향후 일정

- 2011년 11월 : 행정예고
- 2011년 12월 : 위원회 의결 및 관보 게재